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
----------	----

제출년월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96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재난관리기능 인력보강,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 '96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 정원증원 : 30명 (본청 29명, 직속기관 1명)
- ▷ 재난관리기능 인력보강
 - 정원증원 : 1명 (증평출장소)
- ▷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
 - 정원감축 : 5명 (본청)
- ▷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
 - 1995. 12. 31. 25명 ⇒ 1996. 12. 31. 25명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덧붙임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기타참고자료 1부. 끝.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중 본청 "918"을 "942"으로, 직속기관 "960"을 "961"로, 출장소 "230"을 "231"로 한다.

부칙(조례 제2180호, 1995. 2. 17) 제3항중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 정원 25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 정원 25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출장소의 증원정원 1명은 1995년 12월 5일부터, 본청의 증원정원 24명과 직속기관의 증원 정원 1명의 정원은 각각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